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a href="http://www.daedeok.go.kr">http://www.daedeok.go.kr</a>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9-33호**  
2019. 5. 17.(금)

## 차      례

### 조      례(1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조례 제1341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조례 제1342호) .....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조례 제1343호) .....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344호) .....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45호) ...30
-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346호) .....35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47호) .....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48호) .....4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조례 제1349호) .....50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조례 제1350호) .....5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351호) .....60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조례 제1352호) .....64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353호) .....6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54호) .....70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355호) .....7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356호) .....82

### 고 시(3)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장동5호선) 실시계획 고시(고시 제2019-66호) .....89
- 대전 대덕구 오정동 436-2, 27번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고시 제2019-68호) .....9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9-69호) .....93

### 공 고(2)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453호) .....94
- 공공체육시설 수탁기관 모집공고(공고 제2019-461호) .....95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41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로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덕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평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입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입법평가지기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기본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부터 제11조까지).
- 입법평가결과반영 및 종합결과보고서 의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및 제1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42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주민의 생활안전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봉사하는 민간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건전한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민간단체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민간단체 요건) 지원 대상 민간단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덕구에 사무소를 두고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등 주민생활 안전 활동을 수행한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우범지역 방범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 지원 사업
2.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정화 활동 지원 사업
3.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지원 사업
4.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 사업
5. 출소자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범죄예방, 생활안전 및 재난구호 등 건전한 지역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제1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
- 민간단체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보조금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43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네트워크 등이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거나 이를 위해 각종 활동을 행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

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이와 관련된 ‘중간지원조직’, ‘민간네트워크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라.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대전광역시장에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바. “중간지원조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조직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사. “민간네트워크조직”이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상부상조하며 필요에 의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 정부로부터 운영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정부기구 등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 목적”이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는 지역사회 공헌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는 조직의 관계망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조직 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정, 교육,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성별 특성과 상황을 알 수 있는 성별 구분 통계를 활용하도록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분야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학계, 시민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사회적경제관련의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지원)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창업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창업팀 육성

2.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3. 사회적경제인의 교류 소통을 위한 주민 화합행사

4.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한 공연, 전시, 문화제 등 행사

5. 사회적경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사례 연수

6. 사회적경제조직간의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0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단,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한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인력 양성교육
2.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3. 사회적경제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주민교육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생태계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제13조(홍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홍보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4조(우선구매 촉진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 및 단체의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참여 및 거버넌스 구축·운영 활동에 대한 지원

2. 연계기업 및 민간네트워크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5.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6.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및 서비스의 판로 개척 지원

7.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민 교육 및 홍보 지원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관련 전문 기관·법인·단체나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 사업, 제12조에 따른 교육 훈련, 제13조에 따른 홍보 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관련 전문 기관·법인·단체나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8조(양성평등 참여의 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및 운영 시 특정 성별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에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정함(제3조).
-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대해 정함(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사항에 대해 정함(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정함(제16조).
- 위탁관리 및 운영사항에 대해 정함(제17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부칙 제2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44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  
여 생산자의 판로확보와 소득향상을 지원하고, 대덕구민의 건강한 식생활  
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먹거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  
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  
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  
한다.
2. “지역먹거리”란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인근지  
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대덕구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지역먹거리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먹거리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먹거리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정책 분야·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지역주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4. 지역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먹거리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 간 협의 또는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지역먹거리 소비촉진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먹거리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육성·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먹거리 및 영양소 섭취,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조사
2. 주민 먹거리보장 실태조사

3. 주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  
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인적 통계를 활용할 경우, 성별 특성과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먹거리 지원사업의 선정·분석·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먹거리 장터(이하 "장터"라 한다) 및 전문판매장(이하 "전문매장"이라 한다), 가공시설 등 관련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새로운대덕추진단장과 에너지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 관내 회사 급식담당 및 학교 급식 관련자(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조리사 등을 포함한다)
4. 생산자조직·소비자조직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 대표
5. 지역먹거리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대표
6.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7.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먹거리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 사업
2. 통합물류 등 지역먹거리 직거래유통 활성화 사업
3. 지역먹거리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마케팅 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 강화 사업

5. 지역먹거리 안전성 확보, 홍보, 교육, 교류협력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2. 지역먹거리 판매시설

3. 지역먹거리 활용 식품가공 및 창업 상담 등을 위한 교육시설

4. 지역먹거리 관련 시험·연구·인증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지역먹거리의 생산) ① 지역먹거리는 소규모 생산자들의 다품목 소량 생산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수의 지역 생산자가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조성 및 상호간 협력과 연대에 의한 경영 방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의 생산은 소비처를 예측한 후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재배, 사육 또는 생산하는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계약재배 또는 계약생산 지원 사업

2. 친환경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 자재 및 농가 이력관리 사업

3. 학교급식, 공공급식 및 단체급식 등의 맞춤형 식품생산 지원 사업

4. 안전·안심 농산물 생산 및 식품가공 지원 사업

5. 지역먹거리의 상표등록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지역먹거리의 가공지원)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가공을 통한 관련 분야의 일자리창출과 마을단위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먹거리 가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지역먹거리의 인증 등)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촉진을 위하여 지역먹거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하거나 신뢰성 있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인증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인증·표시, 안전성 검사, 품질의 표준화 및 브랜드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인증비용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생산, 가공,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역먹거리의 인증 기준·품목 및 절차 등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먹거리 유통지원)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생산참여자의 소득증대 및 지역먹거리의 유통·소비 등의 촉진을 위하여 장터, 전문매장, 물류센터, 정보시스템 등 지역먹거리 유통·소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지역먹거리 관련 시설의 운영) ①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지역먹거리 관련 시설(이하 "관련 시설"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의 민간위탁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7조(지역먹거리의 소비촉진) ① 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덕구 관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기업 등의 급식과 보육·복지시설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지역먹거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덕구 관내 이용자들이 장터나 전문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먹거리의 소포장·포장박스·직배송·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역먹거리 참여주체의 책임)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과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먹거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먹거리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인근 지역과의 협약 등) ① 구청장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먹거리 관련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인증기준·인증체계 및 관련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 인력 및 기술의 교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공익적 민·관거버넌스 등) ①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정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화와 소통, 의견제시·반영 등의 과정을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의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먹거리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사회적경제조직, 공동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과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지역먹거리 생산, 소비 생태계를 조성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구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지역먹거리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3조 및 제4조).
- 지역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 지역먹거리의 생산, 가공, 인증, 유통, 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 지역먹거리 참여주체별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45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여성창업 지원 및 여성고용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여성 취업지원 사업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11  
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과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에너지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경제계·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창업·정책활동 등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여성창업 지원 및 여성고용 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과 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5조).
-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위원회의 구성·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46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교육지구”란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대덕구 지역을 말한다.
2. “학교”란 대덕구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4. “교육지원관”이란 교육 정책·사업 및 제도개선 등 관련 자문, 대덕구와 교육청, 교육지원청, 대덕구민 등의 의견 수렴, 관련 전문가·기관 등과 협업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와 협력관계 구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교육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육감에게 교육청·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인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3.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5.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지원 사업
6. 학생자치 관련 지원 사업
7. 혁신교육지구 사업 평가 및 컨설팅
8.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 ① 대덕구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혁신교육지구 사업내용,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연도별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부담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성별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인지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혁신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원센터(이하 “혁신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혁신교육지원센터의 기능) ① 혁신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 평가·연구
3. 교육자원 발굴 및 양성교육지원 사업
4.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네트워크 사업
5.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6. 혁신교육 관련 교육 및 홍보
7. 혁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활성화
8.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혁신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성별 특성과 상황

을 고려하여 성인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8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협의회 산하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및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
2. 학생, 학부모,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
3.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교육 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혁신교육지구 대상 사업
2. 협의회 조직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지구 사업 방향 및 의제 발굴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그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4조(교육자원봉사자의 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별로 필요한 교육자원 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자원봉사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 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에 따라 자원봉사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상대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에 성별 특성과 성별 균형 참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할 경우 별도의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참여자에 대한 실비지원)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교육지원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덕구 교육지원관(이하 “교육지원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교육 정책·사업 및 제도개선 등 관련 자문 및 제안
2. 대덕구와 교육청, 교육지원청, 대덕구민 등 의견 수렴 및 관련 전문가·기관 등과 협업체계 구축
3. 대덕구 마을과 학교의 협력 사업
4. 그 밖에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교육지원관이 수행하는 교육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제18조(교육지원관의 보수기준) 교육지원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대덕구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의 업무협약으로 시행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학교와 지역 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제4조).
-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시 예산 및 사업내용 등 협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
-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센터의 운영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 협의회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3조까지).
- 교육지원관의 역할 및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7조 및 제1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47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  
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학교급식”을 “학교급식 등의”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급식 등”이라 함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  
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  
서 실시하는 급식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학교급식”을 각각 “학교급식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학교급식”을 “학교급식 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학교급식”을 “학교급식 등”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덕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제5조제2항 중 “관할 교육청”을 “동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학교 및 시설의 장은”으로,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시교육청을 통하여 제출”을 “제출”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7조, 제12조 및 제13조로 하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2. 동부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담당 과장
  3. 교원단체 추천인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6.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생산자 단체 추천인
  7. 시민단체 추천인
  8.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공동체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

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중전의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시비”를 “국비·시비”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견청취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중전의 제9조)제2항 중 “지원대상학교”를 “지원대상 학교”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0조)제1항 중 “구청장 및 교육장·교육감”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를 “제12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 및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자 정의 및 지원대상범위, 지원신청방법 등을 개정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라 위임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로 개정함.
- 급식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을 지원대상에 추가함(제4조).
-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지원신청 방법을 정비함(제6조).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표준 구성방식에 맞게 정비함(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48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8조제4항제2호”를 “제38조제4항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2018. 12. 24.)을 반영하여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관련 규정 변경(제2조).

“제38조제4항제2호” ⇒ “제38조제4항제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  
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49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  
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개인보호 장구
2.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생활고에 따라 폐지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나 교통사고 등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어 재활용가능 자원 개인수집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4조).
-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함(제5조 및 제6조).
-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에 대한 비용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  
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50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및 인간과 반려동물  
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3호의2에 따른 개·고양이 등,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  
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



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절한 사육·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

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반려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및 인간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소유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반려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51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  
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모범업소와 47조

의2에 따른 등급제 지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제47조에 따른 영업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13조에 해당하는 영업자
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업소 및 각종 위생 정책 참여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 지원
2.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업소 등에 지원하는 사업별 보조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지원대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52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국민의 소중한 생명  
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진 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사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대덕구 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고령운전자 및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제3조).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5조 및 제6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53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을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활용추진협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추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시민참여 제고
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 요청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협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제17조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의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로 재활용 추진 협의회 기능을 대행하고자 하며, 상위 법률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상위 법률 개정·시행으로 상위 법률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함 (제1조 및 제2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의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와 기능 중복으로 재활용 추진협의회 기능 대행 및 조항 정비(제6조).
- 과태료 규정 삭제(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54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제2조제3호(중전의 제2호) 중 “필요하다고”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이(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3명”을 “20명”으로 한다.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보완 신설함(제2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을 13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함(제3조).
- 위원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제4조).
  -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55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고,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과,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실제로 생업과 학업 등을 이유로 대덕구에 생활적 이해관계  
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 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회의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
  4.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5. 쉼터, 산책로, 광장, 옥외 무대 등 주민의 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제4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대덕구의 도시재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 12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단, 주민협의체는 사업지 별 1개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의 참여가 부진한 경우,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주민협의체는 회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임원 선출방법, 역할 등을 정한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요건을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대덕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

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 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 5. 사업과 관련한 홍보

#### 6. 그 밖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10조(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대덕구 관내 활성화지역이 다수인 경우 각 활성화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현장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운영 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구청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남은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사업추진협의회는 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

을 한다.

⑤ 사업추진협의회의 회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⑦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사업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조건)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지원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



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용자를 받는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약정을 우선한다.

제1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

$$\text{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times (1 + \text{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div \text{원래의 대지면적})$$

다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6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법 제27조의2 및 영 제33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비 사업 입점 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접·간접으로 도시 재생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만, 해당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보호 조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라 제외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정함(제3조).
- 주민협의체의 구성방법과 예산 지원 근거를 정함(제5조).
-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규정함(제7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업무를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해 규정함(제11조).
- 도시재생사업 추진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사항을 규정함(제15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56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  
하 “재난피해자”라 한다)”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  
호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  
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으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피해자는”을 “피해주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재난피해자가”를 각각 “피해주민이”로, 제5항 중 “재난피해자의”를 “피해주민의”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6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7조) 본문 중 “제5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를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으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말한다)”를 “말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재난피해자의”를 “피해주민의”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9조) 제목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을 “(그 밖의 주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 등에”를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 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서식]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 사망·실종, [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 사망·실종, [ ] 부상(부상 정도: ),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용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 부 [ ]	내용: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 부 [ ]	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생활안전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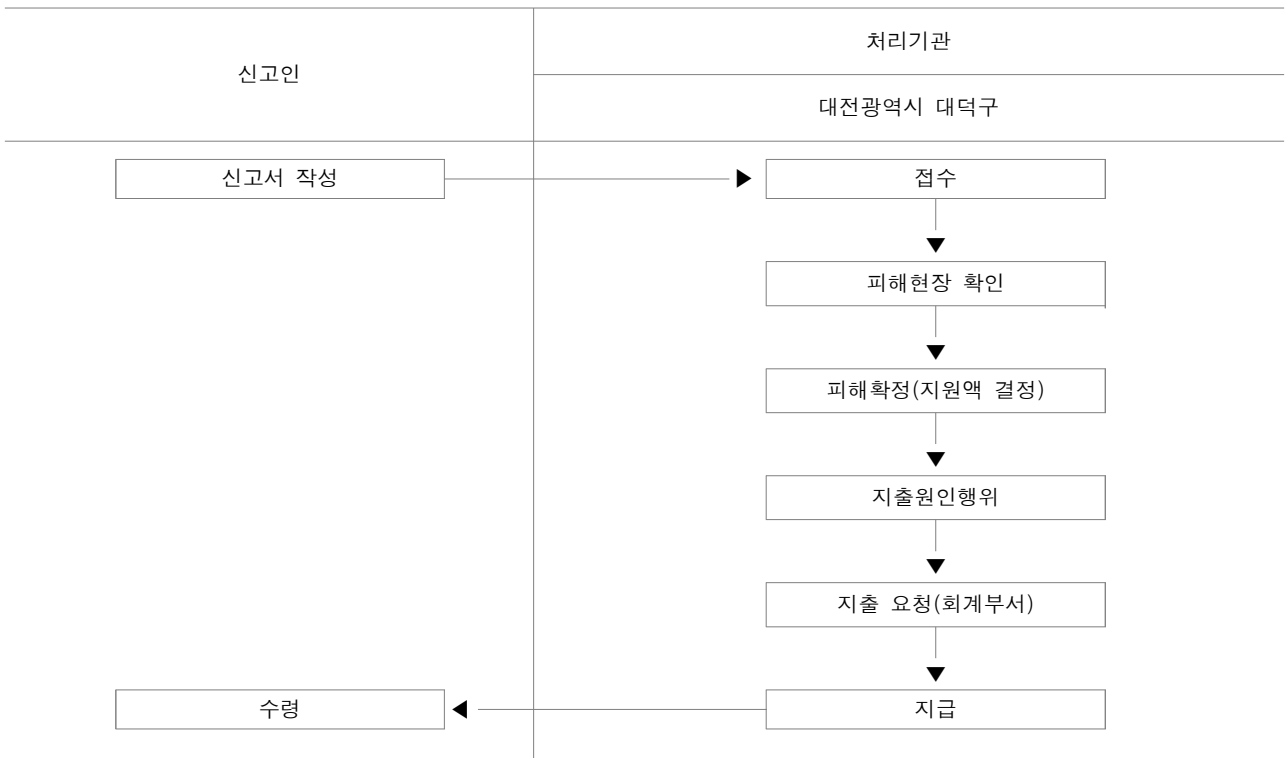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전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인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한 지자체의 여건과 피해 주민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개선·보완

### 2. 주요내용

-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기준을 추가(제4조).
-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사항을 추가함(제5조).
- 구상에 따른 책임 사항을 추가함(제6조).
- 보상금 등의 중복지원 금지 사항을 추가함(제7조).
-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추가함(부칙 제2조).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장동5호선) 실시계획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3-장동5호선) 「소로3-장동5호선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9년 5월 1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8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장동5호선)

2) 사업의 명칭 : 소로3-장동5호선 도로개설사업

다. 사업의 규모

구분	도로명	사업내용	위치		비고
			시점	종점	
도로	소로3-장동5호선	도로개설 L=150m, B=6.0m	장동 84번지	장동 90번지	일부 개설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9. 고시일 ~ 2019.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본 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거나 대체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공사완료 후 해당 시설관리청에 무상귀속

아. 관계도서 : 게재생략(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덕구청 건설과 (☎042-608-5212)에 비치)

### ◎ 편입용지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편입 면적	토지 소유자			권리 이외의 소유자			비 고
	동	지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종 류 및 내용		
1	장동	796-14	구	5	1	농림축산식품부						
2	장동	795-5	도	239	1	국토교통부						
3	장동	796-13	구	88	15	농림축산식품부						
4	장동	796-15	구	3,093	291	농림축산식품부						
5	장동	795-9	도	391	15	국토교통부						
6	장동	85-1	답	248	248	송규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82					
7	장동	85-2	도	66	34	대전광역시						
8	장동	84	답	605	289	송범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77					
9	장동	77	대	1,471	2	이상복	신탄진읍 평촌리 138-13					
10	장동	797	도	165	35	국토교통부						
11	장동	90	전	929	316	송범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77					
12	장동	92-1	전	916	210	송범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77					
13	장동	91	대	238	65	송범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77					
총 계				8,454	1,522							

※ 상기 토지상 지장물건 일체 포함

## 대전 대덕구 오정동 436-2, 27번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대전 대덕구 오정동 436-2,27번지 자율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전 대덕구 오정동 436-2,27번지

나. 면 적 : 345.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대전 대덕구 오정동 436-2,27번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대 표 김 영 기

나. 주 소 : 당초 대전 대덕구 오정동 436-2

변경 대전 서구 둔산로223, 3동 1407호(둔산로,청솔아파트)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80일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9. 05. 03.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높이 (층 수)	용도	세대수 /주차대수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345.4㎡	182.5㎡ / 52.84%	당초	659.66㎡ / 191.98%	최고 15.5m (지상5층)	다세대주택	당초	8세대 / 8대	
		변경	659.66㎡ / 190.98%			변경	12세대 / 8대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 기준) 공급세대 수				비고
	계	51.66㎡	31.03㎡	51.12㎡	
계	12	4	4	4	
일반분양	-	-	-	-	
토지등소유자	-	-	-	-	
임대	12	4	4	4	

8.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끝.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읍내동 362-10, -12	아리랑로151번길 8	2019. 5. 17.	건물신축	아리랑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5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중리동 501-12	쌍청당로 14	2019. 5. 17.	건물신축	쌍청당 문화재명을 반영	
석봉동 308-12	석봉로3번길 38	2019. 5. 17.	건물신축	석봉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석봉동 320-1	석봉로30번안길 44	2019. 5. 17.	건물신축	석봉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3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의 안쪽길	
석봉동 353-81, -13	석봉로57번길 8	2019. 5. 17.	건물신축	석봉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5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대화동 35-123 앞	도시가스관 매설	대화동 35-123 앞	63	아스팔트	7.0	'19.5 ~ '19.6. ( 착공일로 부터 20 일)	48.0 ( 착공일로 부터 20 일)	2.51 ( 허가일로 부터 10 년)
2	덕암동 18-14 앞	도시가스관 매설	덕암동 18-14 앞	63	아스팔트	1.0			
				63	투수콘	3.0			
3	덕암동 20-19 앞	도시가스관 매설	덕암동 20-19 앞	63	아스팔트	1.0			
4	비래동 510-6 앞	도시가스관 매설	비래동 510-6 앞	63	아스팔트	1.0			
5	석봉동 307-20 앞	도시가스관 매설	석봉동 307-20 앞	63	아스팔트	4.0			
6	신탄진동 114-4 앞	도시가스관 매설	신탄진동 114-4 앞	63	아스팔트	1.0			
7	중리동 142-7 앞	도시가스관 매설	중리동 142-7 앞	63	아스팔트	5.0			
8	중리동 245-45 앞	도시가스관 매설	중리동 245-45 앞	63	아스팔트	8.0			
				63	투수콘	2.0			
9	중리동 390-25 앞	도시가스관 매설	중리동 390-25 앞	63	아스팔트	1.0			
				63	아스팔트	4.0			
10	평촌동 225-68 앞	도시가스관 매설	평촌동 225-68 앞	63	아스팔트	2.0			

별첨 : 사진 대지



## 공공체육시설 수탁기관 모집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촌생활체육공원 및 을미기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을 민간위탁·운영하기 위한 수탁관리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5월 1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민간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체육시설	사용료
송촌생활체육공원	선비마을로 200 (법동)	배드민턴장 3면	무료
		족구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농구장 1면	
	풋살경기장 1면	1시간₩10,000원/휴일₩20,000원 (조명사용시 10,000원 추가)	
	선비마을로 110 (송촌동)	실외테니스장 5면	1면 1시간 ₩2,000원 (조명사용시 ₩3,000원 추가)
을미기근린공원	대덕대로 1448번길 1 20(신일동)	실외테니스장 4면	

※시설사용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참고

2. 위탁사무 : 공원 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3. 위탁기간 : 2019. 6. 19. ~ 2022. 6. 18.(3년간)

※ 운영실적 및 체육발전 기여도 등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 4. 응모자격 :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수탁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체육 관련 단체

※ 주된 사무소란 법인(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증명서상 본사 소재지를 말함

#### 5. 위탁조건

- 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독립채산제로 운영
- 손실부담 : 수탁자 부담 원칙 (수탁료 또는 위탁 지원금 없음)
- 위탁보증금 등
  - 위탁시설의 정상운동을 위하여 보증보험(₩50,000,000원)에 가입
  - 건물 및 시설물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 비용부담
  -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 재산가치 또는 사용연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시설의 개선이나 미비 시설의 보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덕구청장이 부담한다.
- 체육시설 이용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징수한다.
- 대덕구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체육교실은 공공성을 위하여 무상사용
- 기타 사항은 위탁관리·운영협약 체결시 약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6. 민간위탁현장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 5. 28(화) 14:00
  - 장 소 : 송촌 생활체육공원 및 을미기 근린공원
    - 송촌생활체육공원(14:00) → 이동 → 을미기근린공원(15:00 예정)
  - 참 석 : 시설 관리·운영 수탁신청(예정)단체
- ※ 사업설명회 불참에 대한 심사상의 반영사항은 없으나 현장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착오 등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9. 5. 30(목) ~ 6. 3(월) / 18:00까지
- 접수장소 : 문화체육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토·일요일 접수 불가)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문화체육과 비치, 붙임2)
  - 사업계획 제안서 및 보조자료 15부(區 권장서식, 붙임3)
  - 신청인(법인, 단체) 현황 1부(붙임4)
  - 서약서 1부(붙임5)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단체등록증) 각 1부

## 8. 사업계획 제안설명 및 수탁자 선정 발표

- 일 시 : 2019. 6. 5(수) 14:00 (예정)
- 장 소 : 대덕구청 2층 중회의실
- 참 석
  -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 기록관리 공무원
  - 제안 설명자(신청인), 보조설명자 등 2인
- 진행방법
  - 신청자(또는 대리인)의 제안 설명(20분 이내)
  - 심사위원 질의, 신청인(보조설명자) 답변

- 심사위원 평가표 작성 및 적격업체 선정
- 선정방법 : 『대전광역시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 평가항목
  - 정량적평가(총30점) : 수행능력, 재정능력, 기술력, 신인도
  - 정성적평가(총70점) : 사업계획, 조직관리, 프로그램 운영, 고객관리,  
지역사회공헌도 등
- 정량적 평가(제안서 서류심사 30점)와 정성적 평가(심사위 평가 70점)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를 선정한다.
- 최고득점가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 선정발표 : 사업계획 설명회 후 당일 집계 발표

## 9. 기타사항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인은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 제출안을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설명하여야 함.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자료는 비공개로 함
- 수탁자로 결정 통지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  
여야 하며 위탁조건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 608-6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

【붙임 1】 수탁기관 선정 적격심사표

【붙임 2】 체육시설 민간위탁 신청서

【붙임 3】 체육시설 민간위탁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붙임 4】 신청인(법인, 단체) 현황 서식

【붙임 5】 서약서

【붙임 6】 위임장(대리인 지정시) 끝.

## 수탁기관 선정 적격심사표

구 분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	평 가																	
계		100																		
정량적 평가 (30점)	<p>1. 수행경력</p> <p>○ 해당분야 체육시설(유료화 시설) 운영 경력 평가</p> <p>- 동일 종목의 입증 가능한 경력 중 가장 유리한 1건만 인정</p> <p>- 배점기준</p>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15%;">5년이상</th> <th style="width: 15%;">3년이상</th> <th style="width: 15%;">2년이상</th> <th style="width: 15%;">1년이상</th> <th style="width: 15%;">1년미만</th> </tr> </thead> <tbody> <tr> <td>풋살경기장</td> <td>8</td> <td>6</td> <td>4</td> <td>2</td> <td rowspan="2">0</td> </tr> <tr> <td>테니스장</td> <td>8</td> <td>6</td> <td>4</td> <td>2</td> </tr> </tbody> </table>	구 분	5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풋살경기장	8	6	4	2	0	테니스장	8	6	4	2	16	실 무 부 서
구 분	5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풋살경기장	8	6	4	2	0															
테니스장	8	6	4	2																
	<p>2. 재정능력(2018년 기준)</p> <p>○ 법인은 재무재표상의 부채비율과 자본금 평가</p> <p>- 세무서 신고자료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대차대조표)에 의해 평가</p> <p>- 안정성 지표(부채율) : 부채/자기자본×100</p>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100%미만</th> <th style="width: 15%;">120%미만</th> <th style="width: 15%;">160%미만</th> <th style="width: 15%;">200%미만</th> <th style="width: 15%;">200%이상</th> </tr> </thead> <tbody> <tr> <td>2.0점</td> <td>1.7점</td> <td>1.4점</td> <td>1.1점</td> <td>0.8점</td> </tr> </tbody> </table> <p>- 유동성 지표(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p>	100%미만	120%미만	160%미만	200%미만	200%이상	2.0점	1.7점	1.4점	1.1점	0.8점	6								
100%미만	120%미만	160%미만	200%미만	200%이상																
2.0점	1.7점	1.4점	1.1점	0.8점																

구 분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	평 가																														
	<table border="1" data-bbox="427 264 1125 362"> <tr> <td>120%이상</td> <td>80%이상</td> <td>40%이상</td> <td>10%이상</td> <td>10%미만</td> </tr> <tr> <td>2.0점</td> <td>1.7점</td> <td>1.4점</td> <td>1.1점</td> <td>0.8점</td> </tr> </table> <p data-bbox="395 421 774 459">- 자금 확보 능력 : 자본금</p> <table border="1" data-bbox="427 510 1125 609"> <tr> <td>10억원이상</td> <td>8억원이상</td> <td>5억원이상</td> <td>3억원이상</td> <td>3억원미만</td> </tr> <tr> <td>2.0점</td> <td>1.7점</td> <td>1.4점</td> <td>1.1점</td> <td>0.8점</td> </tr> </table> <p data-bbox="354 676 1136 884">○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단체 또는 개인은 결산서, 신용정보조회표(금융기관), 잔고증명 등에 근거하여 자금 확보 능력만 평가</p> <p data-bbox="395 929 1120 967">- 자금 확보 능력 : 예·적금 잔고(공고일 전일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427 1025 1125 1236"> <tr> <td>2억5천만원 이상</td> <td>2억원 이상</td> <td>1억5천만원 이상</td> <td>1억원 이상</td> <td>1억원 미만</td> </tr> <tr> <td>6.0점</td> <td>5.1점</td> <td>4.2점</td> <td>3.3점</td> <td>2.4점</td> </tr> </table>					120%이상	80%이상	40%이상	10%이상	10%미만	2.0점	1.7점	1.4점	1.1점	0.8점	10억원이상	8억원이상	5억원이상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0점	1.7점	1.4점	1.1점	0.8점	2억5천만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6.0점	5.1점	4.2점	3.3점	2.4점		
120%이상	80%이상	40%이상	10%이상	10%미만																																	
2.0점	1.7점	1.4점	1.1점	0.8점																																	
10억원이상	8억원이상	5억원이상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0점	1.7점	1.4점	1.1점	0.8점																																	
2억5천만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6.0점	5.1점	4.2점	3.3점	2.4점																																	
	<p data-bbox="327 1265 646 1303">3. 기술력(공고일 현재)</p> <p data-bbox="354 1355 1136 1473">○ 운영책임자 또는 보유 인력(2018.1.1부터 계속 근무)의 해당 종목 자격증 보유 평가</p> <table border="1" data-bbox="422 1534 1129 1706"> <tr> <td>구 분</td> <td>테니스 지도자 관련</td> <td>풋살 지도자 관련</td> <td>없음</td> </tr> <tr> <td>보유인력</td> <td>2</td> <td>2</td> <td>0</td> </tr> </table>					구 분	테니스 지도자 관련	풋살 지도자 관련	없음	보유인력	2	2	0	4																							
구 분	테니스 지도자 관련	풋살 지도자 관련	없음																																		
보유인력	2	2	0																																		
	<p data-bbox="327 1758 678 1796">4. 신인도(2016.1.1.이후)</p> <p data-bbox="354 1832 1136 1937">○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경력, 지방세 체납 경력, 각종 수상실적 평가</p>					4																															

구 분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	평 가										
정성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행정처분등</td> <td style="width: 15%;">없음</td> <td style="width: 15%;">1회</td> <td style="width: 15%;">2회</td> <td style="width: 15%;">3회 이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배 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1.5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0.5점</td> </tr> </table>					행정처분등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배 점	2.0점	1.5점	1.0점	0.5점	15 10 5 7 5 2 10 7 3 15 10	수탁기관 선정
	행정처분등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배 점	2.0점	1.5점	1.0점	0.5점												
	○ 수상실적은 기초자치단체 이상의 행정기관에서 수여한 수상실적만을 대상으로 평가(상장 제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수 상 실 적</td> <td style="width: 15%;">3회 이상</td> <td style="width: 15%;">2회</td> <td style="width: 15%;">1회</td> <td style="width: 15%;">없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배 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1.7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1.4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점</td> </tr> </table>					수 상 실 적	3회 이상	2회	1회	없음	배 점	2.0점	1.7점	1.4점	1.0점		
	수 상 실 적	3회 이상	2회	1회	없음												
	배 점	2.0점	1.7점	1.4점	1.0점												
	<p>1. 사업계획 총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목표 및 프로그램의 공공성</li> <li>○ 전체 사업계획의 전문성, 체계성, 실현가능성</li> </ul>																
	<p>2. 조직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 및 운영인력 구성의 적절성</li> <li>○ 인력수급계획 및 지역일자리 창출 기여도</li> </ul>																
	<p>3. 프로그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구성의 체계성 및 다양성</li> <li>○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용화 방안</li> </ul>																
<p>4. 고객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의 확보 및 관리 시스템</li> </ul>																	



구 분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	평 가
평가 (70점)	○ 민원 대처 및 환류시스템	5	심사위원회
	5. 시설관리	8	
	○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5	
	○ 시설 개선 및 투자 계획	3	
	6. 재무관리	5	
	○ 자금(재정) 확보 및 운영계획	3	
	○ 회계관리시스템 및 투명성 확보 방안	2	
	7. 지역사회 기여도	10	
	○ 지역사회 기여 실적	7	
	○ 지역 체육진흥 기여 계획	3	

<b>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b>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p style="text-align: center;">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margin-top: 40px;">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p>			
첨부서류	1. 법인의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사본)		수수료
	2. 법인 및 개인은 인감증명서 (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없 음
3. 사업계획제안서			
4. 신청인(법인, 단체, 개인)현황			
5. 기타 위탁에 필요한 타법률에서 지정한 서류			

## 체육시설 민간위탁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 작성요령 / 권장서식 >

### □ 규격

- A4 규격 용지 사용
- 표지를 제외하고 페이지 번호 부여 (페이지가 표시된 목차 삽입)

### □ 내용

- 총괄
    - 사업의 목적 및 목표(경영방침), 사업전개 방향 및 주요 사업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계획, 전문인력 확보 현황 및 수급 계획
  - 운영계획
    - 운영계획, 예상수지분석, 고객관리 및 민원처리 계획
  - 시설 유지관리계획
    - 시설, 장비, 물품 관리·운영 계획,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 보완 계획
    - 이용자 편의 확보 및 안전관리 계획
  - 재무관리 계획
    - 자금소요액 분석 및 자금 운영 계획,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방안, 재원 조달 계획
- ※ 사업제안서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 기타

- 서류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 보완 요청에 따라 접수일 익일까지 보완해야 하며 미보완시 당초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하거나 평가에서 제외(0점 처리)
-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후 확인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
-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구의 해석에 의함
-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은 구의 소유로 귀속됨

# 체육시설 운영사업 계획서

## 1. 사업개요

- 가. 사업의 목적, 목표, 필요성
- 나. 사업계획 전개 방향
- 다. 주요 사업내용
- 라.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 2. 조직 및 운영인력 구성 계획

- 가. 운영인력
- 나. 운영인력 확보현황 및 수급계획

## 3. 운영계획

- 가. 운영프로그램 및 고객관리 계획
- 나. 마케팅전략 및 서비스 향상 대책
- 다. 시설별 예상수지 분석내역(예시 참조)

## 4. 유지관리계획

- 가. 시설·장비 확보 및 물품구입·비치 계획
- 나.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 다. 이용자 편의 확보 및 안전관리 계획

## 5. 재정능력

- 가. 자산현황(법인현황 서식 참고)
- 나. 연차별 자금소요액 분석 및 재원조달 계획
- 다. 위탁보증금 제시액 및 예치 계획
- 라.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방안

## 6. 주요사업 추진일정

- 기본항목으로 참고하고 필요시 변경하여 사용

## 신청인(법인, 단체) 현황

1. 명 칭(성명) :
2. 소재지(주소) :
3. 설립(신청)목적 :
4. 대표자 및 임원현황

직위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요경력	비고 (연락처)

5. 설립일자 및 연혁(경력)

년월일	연혁

6. 주요 사업분야 및 실적

※ 필요한 경우 실적증명 첨부

7. 재산현황 / 증빙자료 첨부

※ 동산, 부동산, 부채, 기타 자산 등 (증빙자료 첨부)

8. 관련시설(체육시설) 운영실적

시설명	소재지	운영기간	운영실적
			시설규모, 이용인원, 경영수지

9.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

사업명	활동내용	비고
	- 일시, 장소, 대상, 내용, 실적 등 구체적인 내용 기재	- 사업효과 및 수혜자 등 기재

※ 모든 항목에 대한 입증자료 사본은 원본대조하여 첨부

# 서 약 서

신청인 :

주 소 :

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인 또는 단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인 또는 단체명		연락처	

대덕구 송촌체육공원 및 을미기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수탁기관 선정 공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9.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